

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수시분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민방위기본법」 제23조를 위반한 자(2021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)에게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처분내용을 알리고자, 수시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·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하고자 합니다.

2022년 6월 13일

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

1. 공 고 명: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수시분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2. 6.13. ~ 6.27.
3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

성 명	주 소	위 반 사 항	예 정 된 처 분	반 송 사 유
박*균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월1길*	2021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	과태료 부과 (100,000원)	수취인 불명
이*결	서울시 중구 명동길*	2021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	과태료 부과 (100,000원)	수취인 불명

4. 공시송달 내용

- 가. 민방위기본법 위반(민방위교육의무 불응)에 따른 과태료 수시분고지서 등기우편 반송 및 관련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- 나.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%의 가산금과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1.2%의 증가산금이 합산 부과됨.(증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)
※ 납기내 : 2022. 7. 11. / 납기후 : 2022. 8. 11.
- 다.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5. 문의처 : 서울특별시 명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나리(☎ 02-3396-6565, FAX 02-3396-8931)